MSDS 번호 : AA00630-0000000055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**품명 :** W-480

나. **제품의 권고용도 :** 원료 및 중간체 (윤활기유)

다. **제조자/공급자유통업자 정보**

- **제조자 정보**
  - 회사명 : S-OIL(주) 온산 공장
  - 주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
  - 담당부서 : 정유/윤활/아로마틱공정팀 담당자 : 이정우 매니저
  - 전화번호 : (052) 231-3597 FAX 번호 : (052) 231-2209

- **공급업자/유통업자 정보** : (상동)

- **작성부서**

  정유/윤활/아로마틱공정팀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**유해성·위험성 분류**

- 해당 사항 없음

나. **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**

- **그림문자**
  - 해당 사항 없음.
- **신호어**
  - 해당 사항 없음.
- **유해·위험문구**
  - 해당 사항 없음.
- **예방조치문구**

❑ **예방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❑ **대응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❑ **저장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❑ **폐기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다. **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예. 분진폭발 위험성)**

- 자료 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번호	함유량(%)
수소처리된 잔사유(석유)(RESIDUAL OILS (PETROLEUM), HYDROTREATED)		64742-57-0	100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**눈에 들어갔을 때**

15 분 동안 다량의 의 물로 깨끗이 씻어낼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나. **피부에 접촉했을 때**

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제거한 후 비눗물로 노출 부위를 씻어낼 것

다. **흡입했을 때**

신선한 곳으로 즉시 옮길 것, 호흡이 멎었을 경우 인공호흡 및 필요할 경우 산소를 공급할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라. **먹었을 때**

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마. **기타 의사의 주의사항**

자료 없음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**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**

포말 소화제, CO2, Dry Chemical(고체 화공약품), 물 분무

나. **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**

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; CO, CO2

다. **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**

밀폐된 화재 장소에 들어갈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기구를 착용할 것, 과열된 용기는 물로 식힐 것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**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**

점화원을 차단하고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, 위험지역에서는 흡연, 불꽃 및 불을 금지 할 것,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

나. **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**

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,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둘 것

다. **정화 또는 제거 방법**

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**안전취급요령**

열 및 습기를 피할 것

나. **안전한 저장방법**

용기는 확실하게 밀폐시키고 처음 들여온 저장용기에 계속 저장할 것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**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**

자료 없음

나. **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작업장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설치 할 것

다. **개인보호구**

- **호흡기 보호**

  정상 사용 환경하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 없으나 먼지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사용할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호흡기구를 착용, 유기물 정화 장치를 갖춘 전면 부착용 호흡기구를 착용할 것

- **눈 보호**

  보호안경을 착용함

- **손 보호**

  화공약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갑(예: 고무장갑)을 착용함

- **신체 보호**

  손 보호 시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**외관**

투명한 액체

나. **냄새**

탄화수소 냄새

다. **냄새역치**

자료 없음

라. **pH**

자료 없음

마. **녹는점/어는점**

자료 없음

바. **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**

자료 없음

사. **인화점**

290 ℃ 이상(ASTM D92)

아. **증발속도**

자료 없음

자. **인화성(고체, 기체)**

해당 없음

차. **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**

0.9 ~ 7.0%

카. **증기압**

자료 없음

타. **용해도**

녹지 않음

파. **증기밀도**

자료 없음

하. **비중**

0.8 ~ 0.9

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

자료 없음

너. 자연발화온도

해당 없음

더. 분해온도

자료 없음

러. 점도

30.0 ~ 33.0 cst (@ 100℃)

머. 분자량

자료 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**화학적 안정성**

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,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분리됨

나. **유해 반응의 가능성**

없음

다. **피해야 할 조건**

열, 화기와의 접촉을 피할 것

라. **피해야 할 물질**

강한 산화제

마. **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**

불완전 연소 시 CO 생성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**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**

- 자료 없음

나. **건강 유해성 정보**

- **급성독성**
  - **경구**
    - 자료 없음
  - **경피**
    - 자료 없음
  - **흡입**
    - 자료 없음

- **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**
  - 자료 없음

- **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**
  - 자료 없음

- **호흡기과민성**
  - 자료 없음

- **피부과민성**
  - 자료 없음

- **발암성**
  - 해당 없음

- **생식세포변이원성**
  - 자료 없음

- **생식독성**
  - 자료 없음
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)**
  - 자료 없음
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  - 자료 없음

- **흡인유해성**
  - 자료 없음

- **기타 유해성 영향**
  - 자료 없음

다. **독성의 수치적 척도 (급성독성 추정치 등)**
  - 자료 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**생태독성** 자료 없음
나. **잔류성 및 분해성** 자료 없음
다. **생물농축성** 자료 없음
라. **토양이동성** 자료 없음
마. **기타 유해 영향** 자료 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**폐기방법**

폐기물은 승인된 산업용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

나. **폐기시 주의사항**

다량일 경우 적절한 연소, 소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**유엔번호(UN No.)**

자료 없음

나. **적정선적명**

자료 없음

다. **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자료 없음

라. **용기등급**

자료 없음

마. **해양오염물질**

자료 없음

바. **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**

자료 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**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해당 없음

나. **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해당 없음

다. **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**

유해성미확인물질: 해당없음

라. **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해당 없음

마. **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
바. **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**

자료 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**자료의 출처**

- S-OIL㈜ 분석자료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-9 호 외

나. **최초작성일자**

- 2010. 6. 11.

다. **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**

- **개정횟수**
  - 8 회
- **최종 개정일자**
  - 2026-06-25

라. **기타**

- EU 위원회는 IP 346 에 의해 측정했을 때 3% 미만의 DMSO(Dimethyl Sulfoxide)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해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음.